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49
----------	-------

발의연월일 : 2026. 10. 2.

발 의 자 : 윤준병 · 박용갑 · 임미애
박희승 · 양부남 · 박민규
김성범 · 안호영 · 이해식
朴芝源 · 허 영 · 서영석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과징금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등록취소나 영업정지와 같은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은밀하게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어 내부 제보나 자료 확보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처분시효가 지나치게 짧아 사업자들의 조사 지연 전술 등으로 처분시

효가 만료되어 제재를 피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함.

아울러, 현행법에 따른 시정조치는 행위 중지나 사실 공표 등에 그쳐 인위적으로 왜곡된 가격을 정상 경쟁가격으로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뿐만 아니라 불법상태를 해소하는 시정 조치까지 전면 감면해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5년 이내 2회 이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담합 처분시효를 연장하며, 자진신고자 감면 대상에서 시정 조치를 제외함으로써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명할 수 있는 시정조치의 유형으로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을 규정함(안 제42조제1항).

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로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여 2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다.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서 ‘시정조치 감면’ 규정을 삭제함(안 제44조제1항).

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를 조사를 개시한 경우 조사 개시일부터 10년, 조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종료일부터 10년으로 강화함(안 제80조제5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시정명령을”을 “부당한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 시정명령을”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한 인가·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를 “제43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을 “과징금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정조치나 과징금을”을

“과징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를 “과징금이”로 한다.

제80조제5항제1호 중 “5년”을 “10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7년”을 “10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2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사업자에게 해당행위의 중지, <u>시정명령을</u>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시정조치) ① ----- ----- ----- ----- <u>부당한 공동행위 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의 가격 재결정, 시정명령을</u> ----- -----.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의2(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에 대한 인가·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u>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u> 한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소속 전·현직 임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제129조에 따른 고발을 면제할 수 있다.

1. ·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감경 또는 면제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새롭게 제40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를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재판에서 조사과정에서

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등) ① -----

-----제43조에-----

-----.

1. · 2. (현행과 같음)

② -----과징금-----

-----.

③ -----과징금-----

진술한 내용과 달리 진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이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 등과 제4항에 따른 정보 및 자료의 제공·누설 금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① ~ ④ (생략)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부터 5년

--.

④ (현행과 같음)

⑤ -----과징금이-----

-----.

제80조(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10년

2.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개시하 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반행 위의 종료일로부터 <u>7년</u> ⑥ · ⑦ (생략)	2. ----- ----- ----- ----- <u>10년</u> ⑥ · ⑦ (현행과 같음)
--	--